

## 2026년 청년어업인정착지원 사업시행지침 주요 변경(안)

현행('25년)	변경('26년)	변경 사유
<p>II. 2025년 사업시행 주요내용</p> <p><b>1. 사업대상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, 이하 같음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되며, 유통·가공업·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, '청년어업인'이라고 칭함, 이하 같음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</li> </ul> <p><b>5. 지원금의 지원(사용)방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(보조금)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(기계, 장비 등)을 구입하는 때에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6조 및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,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함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)</li> </ul>	<p>II. 202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</p> <p><b>1. 사업대상자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만 40세 미만 수산업경영(어업, 양식업, 유통업, 가공업, 해양레저관광업 등 포함, 이하 같음) 3년 이하의 청년어업인(예정자 포함되며, 유통·가공업·해양레저관광업이 포함되었으나, '청년어업인'이라고 칭함, 이하 같음) 중 시·도지사(시장·군수·구청장)가 자격·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</li> <li>- 청년어촌정착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,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순위로 선정</li> </ul> <p><b>5. 지원금의 지원(사용)방법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지원금(보조금)으로 취득가액이 50만원을 초과하는 물품(기계, 장비 등)을 구입하는 때에는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46조 및 「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」 제5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, 이후 5년간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<b>e나라도움시스템 등을 통해</b> 보고하여야 함(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대상에 해당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청년어업인정착지원 대상자는 수산업경영인 선발시 우선선정</li> <li>○ 중요재산 취득시 관련 사항을 시스템을 통해 보고 및 공시하도록 명시</li> </ul>

[별표 3]

청년어촌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

유형(업종코드)	상세업종	비고(제한업종)
가구(30)	일반가구, 철제가구 등	
가전제품(31)	가전제품, 냉열기기 등	
주방용품(32)	주방용구, 식기, 정수기 등	
연료판매(33)	주유소, LPG, 연탄, 유류판매, 가스충전소 등	
유통업영리(40)	대형할인점, 편의점, 슈퍼마켓, 연쇄점, 보훈·복지매장 등	백화점(4001, 4002), 면세점(4040), 상품권(4080, 4081, 4083, 4084)
유통업비영리(41)	공무원연금매점, 농·수·축협매장 등	
의류(42)	아동의류, 내의판매점, 스포츠의류 등	
직물(43)	옷감, 침구수예점 등	
신변잡화(44)	안경, 제화점, 신발 등	가방(4401), 시계(4410), 귀금속(4411, 4412), 성인용품(4481)
서적/문구(50)	일반서적, 문구용품, 완구점 등	
학원(51)	유치원, 유아원, 초중고교육기관 등	유학원(5192)
사무/통신기기(52)	컴퓨터, 사무기기 등	
자동차정비(61)	중장비수리, 자동차정비 등	
의료기관(70)	종합병원, 약국, 한의원 등	
보건/위생(71)	이용원, 미용원, 안경 등	미용재료(7111), 안마시술소(7121), 기타대인서비스(7199), 피부미용실(7103)
일반/휴게음식(80, 85)	일반한식, 서양음식 등	카테일바(8010), 룸싸롱(8011), 나이트클럽(8012), 주점(8013)
음식료품(83)	제과점, 정육점, 농축수산물 등	
건축/자재(90)	페인트, 조명기구, 보일러펌프 등	부동산분양(9020)
수리서비스(92)	사무통신기기수리, 가정용품수리 등	
농업(96) 어업(코드번호 없음)	농어업 관련 기자재, 비료·농약 중자, 사료 등	
기계공구(99)	기계, 공구	

[별표 3]

청년어촌정착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

유형(업종코드)	상세업종	비고(제한업종)
가구(30)	일반가구, 철제가구 등	
가전제품(31)	가전제품, 냉열기기 등	
주방용품(32)	주방용구, 식기, 정수기 등	
연료판매(33)	주유소, LPG, 연탄, 유류판매, 가스충전소 등	
유통업영리(40)	대형할인점, 편의점, 슈퍼마켓, 연쇄점, 보훈·복지매장 등	백화점(4001, 4002), 면세점(4040), 상품권(4080, 4081, 4083, 4084)
유통업비영리(41)	공무원연금매점, 농·수·축협매장 등	
의류(42)	아동의류, 내의판매점, 스포츠의류 등	
직물(43)	옷감, 침구수예점 등	
신변잡화(44)	안경, 제화점, 신발 등	가방(4401), 시계(4410), 귀금속(4411, 4412, 4414), 성인용품(4481)
서적/문구(50)	일반서적, 문구용품, 완구점 등	
학원(51)	유치원, 유아원, 초중고교육기관 등	유학원(5192)
사무/통신기기(52)	컴퓨터, 사무기기 등	
자동차정비(61)	중장비수리, 자동차정비 등	
의료기관(70)	종합병원, 약국, 한의원 등	
보건/위생(71)	이용원, 미용원, 안경, 화장품 등	미용재료(7111), 피부미용실(7103), 사우나(7120), 안마·스포츠마사지(7121), 기타대인서비스(7199)
일반/휴게음식(80, 85)	일반한식, 서양음식 등	카테일바(8010, 8510), 룸싸롱(8011, 8511), 나이트클럽(8012, 8512), 주점(8013, 8513)
음식료품(83)	제과점, 정육점, 농축수산물 등	주류판매점(8303)
건축/자재(90)	페인트, 조명기구, 보일러펌프 등	부동산분양(9020)
수리서비스(92)	사무통신기기수리, 가정용품수리 등	
농업(96) / 어업(코드번호 없음)	농어업 관련 기자재, 비료·농약 중자, 사료 등	
기계공구(99)	기계, 공구(9901)	

○ 「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」 제19조에 따른 지원금 사용가능 업종 현행화